

**GENERAL INSTRUCTIONS
DOMESTIC RELATIONS AND GUARDIANSHIP FORMS**

**일반 지침
가족 관계 및 후견인 양식
(Form CC-DRIN)
(양식 CC-DRIN)**

Use the CC-DR and CC-GN Forms if you do not have a lawyer and need to file papers for family law or domestic relations cases. These cases include child custody or visitation, child support, divorce, alimony, name change, contempt, and guardianship. These Instructions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변호사가 없으며 가족법 또는 가족 관계 사건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CC-DR 및 CC-GN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사건에는 자녀 양육권 또는 방문, 자녀 지원, 이혼, 위자료, 개명, 법정 모독 및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이 지침은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
|--|----------|
| DO I NEED A LAWYER? | 1 |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1 |
| WHAT LEGAL RESOURCES ARE AVAILABLE? | 1 |
|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 1 |
| WHERE SHOULD I FILE MY CASE? | 2 |
| 사건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 2 |
| HOW MUCH WILL THIS COST? | 3 |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3 |
| HOW DO I START MY CASE? | 3 |
| 사건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 3 |
| WHAT IS SERVICE OF PROCESS? | 4 |
| 영장 송달이란 무엇인가요? | 4 |
| HOW DO I SERVE SOMEONE | 4 |
|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송달할 수 있나요?..... | 4 |
| WHAT IF SERVICE IS NOT MADE? | 4 |
|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
| WHAT HAPPENS AFTER SERVICE IS MADE? | 5 |
| 송달한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 5 |
| WHAT HAPPENS IN COURT? | 5 |
|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5 |
| WHAT HAPPENS AFTER COURT? | 6 |
| 재판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 6 |

GLOSSARY OF COMMON LEGAL TERMS 7

일반 법률 용어집 7

DO I NEED A LAWYER?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The answer is probably YES i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 The case is contested and the other side (opposing party) has a lawyer.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른 편(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You do not have an address for or cannot locate the other side to serve them with your papers.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 This is a child custody case and there is a dispute about who should have custody.
자녀 양육권 사건이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 This is a divorce case and either side has a house, pension / retirement account, or a large amount of property or income.
이혼 사건이며 한쪽 편이 주택, 연금/은퇴 자금 또는 상당한 재산이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is is a divorce after a long-term marriage and / or you want alimony.
오랜 시간의 결혼 생활 후, 또는 위자료를 원하는 이혼 사건입니다.
- This is an annulment case.
취소 사건입니다.

NOTE: You may speak with or hire a lawyer at any time during your case. Hiring a lawyer at the last minute is usually not grounds for a postponement of your hearing or trial date. Many lawyers may not accept a case close to a hearing or trial date if they believe there is not enough time to prepare.

참고: 사건 진행 중 언제라도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리 또는 재판 일자를 연기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때 심리 또는 재판 일자에 근접한 시기에 사건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WHAT LEGAL RESOURCES ARE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Court Clerks - Clerks cannot give legal advice, complete forms, or tell you how to complete forms, but they can give you information about where to file your papers, the filings costs, and resources and services that are available.

법원 서기 - 서기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양식을 작성하거나, 양식 작성 방법을 말해줄 수 없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곳, 제출 비용, 사용 가능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ryland Court Help Center - The Court Help Center is staffed by lawyers who provide free help by phone or chat. They cannot represent you in court.

메릴랜드 법원 지원 센터: 법원 지원 센터는 전화나 채팅으로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운영됩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Hours: Monday-Friday, 8:30 a.m. to 8:00 p.m.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반~오후 8시

Telephone: (410) 260-1392

전화번호: (410) 260-1392

Live Chat: Accessed directly from mdcourts.gov/helpcenter

라이브 채팅: mdcourts.gov/helpcenter 에서 직접 액세스

Family Law Help Centers/Family Law Help/Pro Se Assistance - Each circuit court offers information, assistance, or referrals. Services vary by court. Court Help Center attorneys and staff cannot represent you in court or complete forms.

가족법 지원 센터/가족법 지원/자기 변호 지원 - 각 순회법원은 정보, 지원 또는 추천을 제공합니다. 법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지원 센터 변호사와 직원은 법원에서 또는 양식을 작성할 때 대리할 수 없습니다.

Family Services Programs - Services differ by court, and may include custody evaluators, mediators, and more. Visit mdcourts.gov/family for information.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는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권 평가, 조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dcourts.gov/family 를 방문하십시오.

The People's Law Library of Maryland (peoples-law.org) - This legal information and self-help website. The website also includes links to resources for free or reduced-fee lawyer referrals.

주민 법률 도서관 (peoples-law.org) - 법률 정보와 자력구제 지원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 추천을 위한 리소스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amily Law Hotline - This Hotline is staffed by lawyers and is free to low-income callers. Hotline lawyers give information about Maryland family law to help you understand your rights and legal options. Hotline lawyers cannot represent you in court but can give you information about Maryland family law and may give you the phone number of a lawyer referral service.

가족법 핫라인 - 이 핫라인은 변호사에 의해 운영되며 저소득 상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 변호사는 메릴랜드 가족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의 권리와 법적 옵션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핫라인 변호사는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없지만 메릴랜드 가족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추천 서비스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Hours: Monday-Friday, 9:30 a.m. to 4:00 p.m.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반~오후 4시

Telephone: 1-800-845-8550

전화번호: 1-800-845-8550

Court Help Video Library - available at mdcourts.gov/videos.

법원 지원 동영상 라이브러리 - mdcourts.gov/videos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ryland Law Help App - This is a free mobile app that includes links to self-help videos, court form finders, access to legal help by phone or chat, public law libraries, mediation resources, and more.

Visit: mdcourts.gov/legalhelp/mobileapp

메릴랜드 법률 지원 앱 - 자력구제 동영상, 법원 양식 검색기,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한 법률 지원 이용, 공공 법률 도서관, 중재 리소스 등을 포함한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다음 사이트 방문: mdcourts.gov/legalhelp/mobileapp

WHERE SHOULD I FILE MY CASE?

사건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The type of case determines where to file your case. If you are unsure about where to file, ask the court clerk or speak with a lawyer.

사건 유형에 따라 사건을 제기해야 하는 곳이 결정됩니다. 사건을 제기할 곳을 모르겠다면 법원 서기에게 물어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ANNULMENT:**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you live, in the county where the marriage was performed, OR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your spouse lives or works.
취소: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또는 결혼식을 올렸던 카운티의 순회법원이나 배우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DIVORCE:**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you live OR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your spouse lives or works.
이혼: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이나 배우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CHILD CUSTODY, VISITATION, or CHILD SUPPORT:**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the child(ren) or either parent lives. Different rules may apply if the child(ren) currently live(s) outside of Maryland.
양육권, 방문 또는 자녀 지원: 자녀 또는 한쪽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녀가 현재 메릴랜드주 외부에 살고 있다면 다양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HANGE OF NAME:**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you live.
개명: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PETITION FOR GUARDIANSHIP:** in the circuit court in the county where the minor or alleged disabled person lives or, if they are not a Maryland resident, in the county in which they are physically present in Maryland. If you are requesting guardianship of the property, you may also file the petition in any circuit court in the county in which the minor or alleged disabled person has property such as a house.
후견인 청원: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그들이 메릴랜드주의 시민이 아닐 경우, 그들이 메릴랜드주 내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재산 후견인을 요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주택과 같은 재산을 가진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PETITION FOR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in either the circuit or District Court in any county.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원: 카운티의 순회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ANSWER (to a complaint, petition, or motion):** in the court where the complaint, petition or motion was filed.
답변(고소장,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고소장, 청원 또는 신청을 제기한 곳의 순회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REQUEST TO MODIFY or ENFORCE (by contempt filing):** a court order in the same court and under the same case number as the existing case. A request to modify reopens the initial case.
수정 또는 시행 요청 (법정 모독 제기에 따라): 동일 법원의 법원 명령이며 기존 사건과 동일한 사건 번호를 따릅니다. 수정 요청을 하면 처음 사건을 다시 개시합니다.

- **MO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in the same court and **under the same case number** as your absolute divorce case.

이전 이름으로 복원하기 위한 신청: 완전 이혼 사건과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HOW MUCH WILL THIS COST?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There are filing fees for all cases except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cases, and a Mo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You must prepay these fees before the court will open your case.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이전 이름으로 복원하기 위한 신청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원이 사건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수수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If you cannot afford the filing fees, ask the court to waive them at the beginning of your case by filing a **Request for Waiver of Prepaid Costs (CC-DC-089)** with your initial papers. If the court grants your request, you will not pay the fees at the time of filing and your case will move forward. If the court denies your request, you have 10 days to pay the filing fee. If you do not pay the fees, your case will **not** move forward. Contact your county's court clerk, or visit mdcourts.gov/circuit/feeschedule for a list of filing fees and costs.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초기 서류와 함께 **선불 비용 면제 신청서(양식 CC-DC-089)**를 제출하여 사건 개시 시점에 법원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법원이 요청을 받아 들이면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요청을 거부하면 10일 이내에 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 목록과 비용은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 문의하거나 mdcourts.gov/circuit/feeschedule 을 방문하십시오.

If you are granted a Waiver of Prepaid Costs, you may be required to pay court fees and costs at the end of your case. If you can't afford to pay the fees at the end of the case, you may ask the court to waive them at the end of the final hearing in your case or by filing a **Request for Final Waiver of Open Costs (CC-DC-090)**. For information about fee waivers, visit: mdcourts.gov/legalhelp/filingfeewaivers.

선불 비용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사건을 종료한 후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종료한 후에도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사건의 최종 심리를 마칠 때 또는 개시 비용 최종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DC-090). 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dcourts.gov/legalhelp/filingfeewaivers.

There is a fee if you have the Sheriff's Office serve your papers on the opposing party (See "WHAT IS SERVICE OF PROCESS?"). The court clerk will provide you with a fee quote. If you are granted a waiver of prepayment of fees, this usually includes the Sheriff's fee.

보안관실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영장 송달이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법원 서기는 수수료 견적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수료 선납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면제 내용에는 보안관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HOW DO I START MY CASE?

사건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Review the list of court forms in the Courts link on the Maryland Judiciary website (mdcourts.gov/forms). Choose the form, with instructions, for the kind case you want to file.

메릴랜드 사법부 웹사이트의 법원 링크를 통해 법원 양식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mdcourts.gov/forms). 제기하고 싶은 사건 유형에 대하여 지침이 포함된 양식을 선택하십시오.

Forms are also available from the court clerk. Court clerks **cannot** tell you which forms to file or complete the forms for you.

법원 서기로부터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서기는 어떤 양식을 제출하라고 말하거나 귀하를 위해 양식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Review the instructions carefully and complete all forms required for your case, including any financial statements if you are seeking child support, alimony, or property distribution.
자녀 지원, 위자료 또는 재산 분배를 원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침을 주의깊게 읽은 후 사건에 필요한 양식을 모두 작성하십시오.
- Complete **Civil-Domestic Case Information Report (CC-DCM-001)**.
가사 사건 정보 보고서 (CC-DCM-001) 를 작성합니다.
- Make sure that all names and complete addresses are clearly written on each form. If it's a new case, the clerk will assign a case number when you file. If you are reopening a case, include the case number on all forms. Make at least two (2) copies of **all forms**: One (1) set for yourself **AND** one (1) for service on the person you're filing against. If you want the clerk's office to make copies, they may charge a fee.
모든 이름과 전체 주소를 각 양식에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새 사건인 경우, 법원 서기는 사건을 제출할 때 사건 번호를 할당합니다. 사건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모든 양식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양식을 적어도 두 (2) 부 작성하십시오. 한 (1) 세트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한(1) 세트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서기 사무실이 사본을 만들길 원할 경우,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File completed and signed forms in the clerk's office with the filing fee, or Request for Waiver of Prepaid Costs (CC-DC-089). Do not serve a copy of the Request for Waiver on the person you are filing against. The clerk will not docket your case until a judge decides whether to grant the fee waiver request.
신청 수수료 또는 선불 비용 면제 요청서 (CC-DC-089) 와 함께 작성을 완료하고 서명한 양식을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에게 면제 요청서 사본을 송달하지 마십시오. 서기는 판사가 수수료 면제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사건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 Once your case is docketed, the clerk's office will issue a **Writ of Summons**. This may take a few days to a week or two (2) weeks if you filed a Request for Waiver of Prepaid Costs (CC-DC-089). After the clerk issues the Writ of Summons, the case is ready for **service of process** on the person you filed against. **Exception:** if you are filing a Mo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within 30 days** of your divorce judgment, a Writ of Summons is not required for service.
사건이 표기되면 서기 사무실은 **소환 영장**을 발행합니다. 소환장 발행에는 선불 비용 면제 요청서 (CC-DC-089) 를 제출한 경우 며칠에서 1주 내지 이(2)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서기가 소환 영장을 발행한 후,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영장을 송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외:** 이혼 판결 후 **30일 이내**에 이전 이름으로의 복원 신청을 제출한 경우, 소환 영장을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NOTE: Your signature on each form is made under oath and you are stating that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참고: 각 양식은 선서 하에 서명되어 지고, 귀하는 정보와 진술이 귀하의 지식 한도 내에서 진실임을 진술하게 됩니다.

WHAT IS SERVICE OF PROCESS?

영장 송달이란 무엇인가요?

Service of Process (or “service”) means providing the person you filed against copies of the papers you filed and the summons issued by the court. The Court Help Video Library at mdcourts.gov/reference/videolibrary contains information about service of process.

영장 송달 (또는 "송달") 이란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법원이 발행한 소환장을 소송을 제기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mdcourts.gov/reference/videolibrary 의 법원 지원 동영상 라이브러리에서 영장 송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OW DO I SERVE SOMEONE?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송달할 수 있나요?

Methods of Service:

송달 방법:

****IMPORTANT: You may NOT serve the other side yourself directly, or by certified mail, when serving a Writ of Summons and an initial filing (or papers that are reopening a previous case) ****

****중요 사항: 소환 영장 및 초기 서류 (또는 이전 사건을 다시 개시하는 서류) 를 송달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송달할 수 없습니다.**

Petition for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or Petition for Peace Order: served by a law enforcement official. There is no service fee for a Petition for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청원서 또는 화해 명령 청원소: 경찰관이 송달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청원서에는 송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rvice by Sheriff - For a fee (if not waived), the clerk can forward the Writ of Summons with a copy of the filing to the Sheriff’s Office. The Sheriff will attempt service and file the required Return (Proof) of Service with the court.

보안관에 의한 송달: 수수료를 받은 후 (면제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제출 사본을 포함하여 소환 영장을 보안관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 반송증 (증명서) 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Service by Private Process - Forward the Writ of Summons and a copy of all the papers you filed to a private process server. They will serve the other side and file an **Affidavit (Proof) of Service** with the court. Private process companies charge a fee. Private process may also be made any person who is: 1) over 18, and 2) not involved in the case. Give this person an **Affidavit of Service (Hand Delivery/Private Process) (CC-DR-055)** to complete. You cannot complete the Affidavit, but you may file it with the court.

개인 영장 송달 절차 - 소환 영장과 제출한 모든 서류 사본을 개인 영장 송달인에게 전달합니다. 송달인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 진술서(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 송달 회사가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개인 송달은 또한 1) 18세 이상 2)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송달 진술서 (직접 배달/개인 송달)(CC-DR-055)** 를 제공하여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귀하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Service by Certified Mail, Restricted Delivery – Have someone (not you) send the Writ of Summons and a copy of all papers you fil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with **restricted delivery**. Service is completed when the person being served *personally* signs the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card, which will be returned to the person who mailed the papers for service. That person must complete an **Affidavit of Service (Certified Mail Restricted Delivery-Receipt Requested) (CC-DR-056)**. You must attach the original return receipt card to the Affidavit of Service and file it with the court. Keep a copy of both sides of the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card.

배달증면우편을 통한 송달, 제한적 배달 - 다른 사람(귀하가 아님)에게 소환 영장과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제한적 배달**을 명시하는 확인증을 반환받으십시오. 송달 대상자가 배달증명우편 반환 확인증에 **개인적으로** 서명하고 송달을 위해 서류를 우편 발송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송달이 완료됩니다. 해당인이 **송달 진술서(배달증명우편 제한적 배달-확인증 요청)(CC-DR-056)**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 진술서에 원본 반송 확인증을 첨부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증명우편 반송 확인증 양면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WHAT IF SERVICE IS NOT MADE?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fter several unsuccessful attempts to make service of process by the Sheriff, a private process server, or by certified mail, OR if you have been unable to find where the other side lives or works, you may file a **Motion for Alternate Service and Affidavit (CC-DR-070)** with a **Notice-Alternate Service (CC-DR-072)**. Attach proof of your efforts. A judge will decide if you may use another form of service. If your motion is granted, you will notify the person you filed against of your court filings by whatever reasonable method the judge orders. There is a fee for the Sheriff to post notice for alternate service on the sheriff's bulletin board.

보안관, 개인 영장 송달인, 또는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영장을 송달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곳을 알 수 없다면, **대체 송달 통지 (CC-DR-072)**를 포함하여 **대체 송달 및 진술 (CC-DR-070)**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노력의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판사는 다른 송달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판사가 명령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보안관 공지 게시판을 통한 대체 송달을 위한 통지문을 게시하는 보안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f the Sheriff posted notice of alternate service, the Sheriff's office will file proof with the court. If the court ordered another form of alternate service, you must file proof with the court that it was completed.

보안관이 대체 송달 통지문을 게시하면, 보안관은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다른 형식의 대체 송달을 명령한 경우, 그러한 송달을 완료한 후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he Maryland Judiciary's court help video library has a helpful video and resources on service of process at mdcourts.gov/video/selfhelp/serviceofprocess.

mdcourts.gov/video/selfhelp/serviceofprocess에 있는 메릴랜드 사법부 법원 지원 동영상 라이브러리에서 영장 송달에 대한 유용한 동영상과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WHAT HAPPENS AFTER SERVICE IS MADE?

송달한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After service of process is made **AND** proof of service is filed with the court, the person you served may file an Answer, a motion challenging service, jurisdiction, or other aspects of your filing. If the person resides or was served:

영장 송달이 완료되고 **그리고**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송달 상대방이 답변서,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 관할권 또는 제출 사건에 대한 기타 측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또는 송달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

- within Maryland, they have **30 days** to file a response.
메릴랜드주에 거주할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n another state, they have **60 days** to file a response.
다른 주에 거주할 경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n another country, they have **90 days** to file a response.
다른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ourt-approved response forms:

법원 승인 답변서 양식:

- **Answer to Complaint / Petition / Motion (CC-DR-050)**
고소장/청원서/신청서에 대한 답변(CC-DR-050)
- **Counter-Claim for Absolute Divorce (CC-DR-094) or**
완전 이혼에 대한 반소(CC-DR-094) 또는
- **Counter-Claim for Custody (CC-DR-095)**
양육권에 대한 반소(CC-DR-095)

If No Answer is Filed:

아무런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If no Answer is filed by the deadline, file a **Request for Order of Default (CC-DR-054)**. The judge will grant the Order of Default if they are satisfied that the other person is not presently in the military and proof of service has been filed with the court. The clerk's office will issue a **Notice of Default**. The other person has 30 days to file a written explanation about why an Answer was not filed and ask the court to vacate (cancel) the Order of Default. If the other person does not respond to the Notice of Default, the case may move forward without their participation.

기한까지 아무런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명령 요청서 (CC-DR-054)** 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군대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송달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판사는 채무불이행 명령을 승인할 것입니다. 서기 사무실은 **채무불이행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령을 취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참여 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WHAT HAPPENS NEXT?

그런 다음 어떻게 진행되나요?

After each person's papers have been filed and served, or an Order of Default is granted, the court will schedule your case. You may be required to attend the following, and will receive notice by mail and possible by other means:

각 당사자의 서류가 제출 및 송달되거나 채무불이행 명령이 승인된 후 법원의 사건 일정을 잡습니다. 다음 일정에 참여해야 하고 우편이나 가능한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scheduling conference:** to set dates and deadlines, and possibly make referrals for services.
일정관리 회의: 기한을 정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 **settlement conference:** to explore area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합의 회의: 합의 및 불일치 분야를 조사합니다.
- **hearing or trial:** if you have settled your issues and just need to formalize the divorce, name change, custody agreement, etc., you will be given a hearing. Otherwise, the case will go to trial. I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asses after the filing of an Answer or Order of Default and you have not received notice from the court, you may file a **Request for Hearing or Proceeding (CC-DR-059)**.
심리 또는 재판: 문제에 대해 합의했으며 단지 이혼을 공식화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양육권을 합의해야 한다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재판으로 갑니다. 답변서 또는 채무불이행 명령을 제출한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심리 또는 법정 절차 요청서 (CC-DR-059)**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e Maryland Safe at Home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provides a substitute addres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have moved or are about to move to a location unknown to their abuser. It also offers free confidential mail-forwarding for first-class mail and legal papers. Application assistants can help you apply. Call 1-800-633-9657 ext. 3875, visit sos.maryland.gov/ACP, or email safe.at.home@maryland.gov.

메릴랜드주 자택 주소 기밀 유지 안전 프로그램은 학대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치로 이사했거나 이사할 예정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체 주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1종 우편 및 법률 서류에 대하여 기밀 우편을 무료로 전달해드립니다. 신청 도우미는 귀하가 신청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all 1-800-633-9657번 교환 3875번으로 전화하거나, sos.maryland.gov/ACP 을 방문하거나, safe.at.home@maryland.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WHAT HAPPENS IN COURT?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At your hearing or trial, you have an opportunity to testify. Witnesses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about your case may also testify. You may present evidence that may be accepted by the court under the **Rules of Evidence**. The person you filed against will also have a chance to present their side of the case and offer testimony, witnesses, and evidence. Each side may cross-examine (ask questions of) the other side's witnesses about their testimony. In preparing for your court day, keep the following in mind:

심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직접 경험을 한 증인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거 규칙에 따라 법원이 수락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 역시 사건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증언하고 증인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한 반대 심문(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를 준비할 때 다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 Arrive **before** your scheduled trial time. You must go through security and find the courtroom where your case will be heard.
예정된 재판 시간 **이전에** 도착합니다. 보안 절차를 통과하고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법정을 찾아야 합니다.

- Prepare the documents and evidence that you want to show the court. Have **at least** three (3) copies of any documents you bring: one (1) for the court, one (1) for the other side, and one (1) for yourself.
The court is not required to make copies for you.
법원에 제시하고 싶은 서류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한(1) 부는 법원용, 한 (1) 부는 상대방용, 나머지 한 (1) 부는 자신을 위해 적어도 세(3) 개의 사본을 소지합니다. 법원은 귀하를 위한 사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 If you filed the initial case and fail to appear for the hearing date, your case may be dismissed. If a Counter-Complaint/Claim was filed and you fail to appear, the other side may still proceed and could be granted the relief requested in their papers.
처음 사건을 제기하고 심리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한 반소가 제기되고 귀하가 출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여 그들의 서류에서 요청된 구제책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If you have an emergency that prevents you from appearing for your hearing, **contact the court** before the hearing. However, contacting the cour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r case will be postponed.
심리에 출두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리일 전에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법원에 연락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건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 Children under 18 should not be witnesses in a divorce or custody trial. However, if the court has ordered you to bring your child(ren) to court, you must do so. If you believe your child(ren)'s testimony is necessary, speak with a lawyer about how to present this to the court. If a parent must be in court, and needs childcare, some courthouses provide this service.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courthouse.
18세 이하에 아동은 이혼 또는 양육권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녀를 법원에 데리고 오라고 주문할 경우,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자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증언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한 부모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탁아가 필요한 경우, 일부 법원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법원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When the hearing or trial is complete, the magistrate or judge will make a decision. They may state the facts, evidence, and the law that applies in their decision (or **ruling**) either that day or in a written decision mailed to both sides on a later date.
심리 또는 재판이 완료된 경우, 치안판사 또는 판사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해당 일자 또는 차후 일자에 양측에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하여 판결(또는 **결정**)에 적용되는 사실, 증거, 법률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You should consider consulting or hiring a lawyer to help you.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 고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WHAT HAPPENS AFTER COURT?

재판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What happens after a decision is made depends on whether a judge or magistrate heard your case. 결정이 내린 후 진행되는 방식은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If your hearing was in front of a judge, they will sign a final order. You may receive the order at the end of the hearing or by mail.
심리가 판사 앞에서 진행되었다면 판사가 최종 명령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심리를 마칠 때 또는 우편으로 명령문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If your hearing was in front of a magistrate, they will issue a Report and Recommendations with findings of fact and a proposed order. A judge will review it before it becomes final. After ten (10) days, a judge will sign the order and it will be mailed to both sides.
심리가 치안판사 앞에서 진행된 경우, 사실에 대한 소견과 제안된 명령을 포함한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발행합니다. 판사가 최종 결정 이전에 이를 검토합니다. 십(10) 일 이후에, 판사는 명령문에 서명하고 양측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 If either party believes that the magistrate or judge made an error in applying the law in their case, there are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court to review the decisions and orders. You may file exceptions to a magistrate's report, or an appeal of a judge's decision to another (higher) court.
Requests for review, exceptions, or an appeal are complex with specific requirements and strict deadlines. Speak with a lawyer before filing any further papers.
한쪽 당사자가 치안판사 또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결정 및 명령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상급) 법원에 치안판사 보고서의 예외 또는 판사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예외 또는 이의제기 요청은 특정 요건과 엄격한 기한을 가지고 있어 복잡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DICTIONARY
GLOSSARY OF COMMON LEGAL TERMS

사전
일반 법률 용어집

Affidavit: A written statement made under oath.

선서 진술서: 선서 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서.

Alimony: Court-ordered payments made by one (1) spouse to the other for support.

위자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한(1) 명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법원의 주문 금액.

Annulment: A court's decision that a marriage is void; it never legally existed. It is available only under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취소: 결혼이 무효이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특정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Answer: A written response to a complaint, petition or motion.

답변: 고소장,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서면 응답.

Arrears: The amount of money a person failed to pay when due. A person who does not make court-ordered payments such as alimony or child support is "in arrears" for the amount they owe.

연체금: 어떤 사람이 기한을 지나 결제하지 못한 금액. 위자료 또는 자녀 지원과 같은 법원 명령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채무로 가진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Certificate of Service: A written statement filed with the court as proof that copies of papers filed with the court were given to the appropriate parties.

송달 증명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 복사본이 적절한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진술서.

Child Custody: Court-ordered arrangement of who children live with and how decisions about them will be made. There are two (2) types of custody:

자녀 양육권: 누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자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법원 명령에 따른 합의. 두(2) 가지 유형의 양육권이 있습니다.

Legal Custody/Decision-making authority: Refers to how long-term decisions about children's education, health, religion, etc. are made.

법적 양육권/결정권: 자녀의 교육, 건강, 종교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Physical Custody/Parenting time: Refers to where children live and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with each parent.

물리적 양육권/육아 시간: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와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Child support: The amount of financial and other support each parent is responsible to provide for the care of their minor child(ren).

자녀 지원: 각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금전 규모와 기타 지원.

Child support guidelines: Maryland's guidelines are us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child support. The guidelines formula calculates support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family, additional expenses (for example, childcare and health insurance), and the combined gross income of the adults. The court may award child support higher or lower than the guidelines. See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Family Law Article, Sections 12-201 through 12-204.

자녀 지원 가이드라인: 적절한 자녀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메릴랜드주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 공식은 가족 내의 자녀 인원수, 추가 비용 (예: 탁아, 건강 보험), 성인의 결합 총 소득액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가이드라인 이상이나 이하의 금액을 자녀 지원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주석 법령 조항, 섹션 12-201 ~ 12-204 를 참조하십시오

Civil (or Court) Clerk: A court employee who receives and maintains case files and issues some court documents such as writs of summons, copies of court orders, and other notices.

민사 (또는 법원) 서기: 사건 서류를 수령 및 관리하고, 소환 영장, 법원 명령문 사본, 기타 통지문과 같은 법원 서류를 발행하는 법원 직원.

Complaint: One (1) type of legal paper that starts a case. The person who files the initial case is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complaint is made is the defendant.

고소장: 사건을 개시한 법적 서류 중 한(1) 가지 유형. 초기 사건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부르고 고소장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Contempt: The failure to follow a court order. One (1) side may request that the court determine that the other side is in contempt.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a person is "in contempt," it can punish them.

법정 모독: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음. 한 (1) 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정 모독임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람이 "법정 모독"임을 결정하고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다.

Contested Case: A case that involves one (1) or more disputed issues.

논쟁이 있는 사건: 한 개 이상의 쟁점이 있는 사건.

Counter-Complaint/Counter-Claim: A complaint the defendant files against the plaintiff after the plaintiff's initial complaint.

반소: 원고가 초기 고소장을 제기한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한 고소장.

Custody: The legal arrangements regarding with whom a child will live and how decisions about the child will be made. Custody has two (2) parts: legal and physical. Legal custody refers to decision-making authority. Physical custody refers to the child(ren)'s time with each parent. Parents may agree on the custody arrangement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hild(ren). If the court decides custody, the judge determines w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and makes an order.

양육권: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자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와 관련된 법적 합의입니다. 양육권에는 법적 양육권과 물리적 양육권이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은 의사 결정 권한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양육권은 각 부모와 지내는 자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양육권 합의가 자녀(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경우, 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명령을 내립니다.

Decision/Judgment/Opinion/Ruling: The result reached by the court in resolving the disputes in a case.

결정/판결/의견: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과.

Default: A party's failure to file a timely answer to a complaint, motion or petition after proper service of process has been made. After a certain time has passed, the plaintiff can ask the court for a default judgment.

채무불이행: 한 당사자가 영장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후 고소, 신청 또는 청원에 적시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는 법원에 채무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efault Judgment: A court's finding on behalf of a plaintiff because the defendant did not respond to a complaint, motion, or petition.

채무불이행 판결: 피고가 고소, 신청 또는 청원에 답변하지 않았기에 법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내리는 판결입니다.

Defendant: The person the case is brought against. If a defendant files a counter-complaint/claim, they become the counter-plaintiff.

피고: 사건이 제기되는 대상자입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반대 원고가 됩니다.

Discovery: A process in which each party is allowed to investigate the other side's case and get information related to the case before a trial or hearing. Special rules determine how and when discovery occurs.

Discovery methods include:

증거 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재판이나 심리 진행 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한 규칙에 따라 언제 어떻게 증거를 개시할지 결정됩니다.

증거 개시 방법:

- **Interrogatories:** Written questions one side gives the other side to answer under oath.
질문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서 하에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 질문입니다.
- **Oral Depositions:** In-person question-and-answer sessions about the facts of a case. Answers are made under oath and recorded.
선서 하 증언: 사건의 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대면하는 질문과 답변 세션입니다. 선서 하에 답변하게 되고 기록됩니다.
- **Requests for Production,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sking one (1) party to give the other part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문서의 생산, 조사 및 복사 요청: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 **Orders for mental or physical examinations:** Asking a party to be examined by an expert.
정신 또는 신체 검사 명령: 한 당사자가 전문가에 의해 검사받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 **Requests for Admissions of Fact:** Asking the party to admit to facts so that those facts do not have to be decided by the court.
사실 인정 요청: 해당 사실이 법원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한 당사자에게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Dissolution: Another name for the legal end of a marriage.

파경: 결혼의 법적 종료를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Divorce: A process for the ending of a marriage.

이혼: 결혼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Absolute Divorce: The legal ending of a marriage. Once granted, both parties can remarry.

완전 이혼: 결혼의 법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양측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Evidence: Testimony of witnesses and documents presented to and considered by the court in making a decision. Rules of evidence are complicated and technical, you should consider consulting or hiring a lawyer to help you.

증거: 증인의 진술과 제출되는 문서를 의미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하는 대상입니다. 증거 규칙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hibit: A document or object admitted into evidence to prove or disprove an issue in court.

증거물: 법원에서 쟁점을 증명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문서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Filing: The process of giving the clerk of the court papers in a case. Those papers are also called “filings.” Some filings require payment of a fee.

제출: 법원 서기에게 사건 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제출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제출물에는 수수료 지급이 필요합니다.

Grounds for Divorce: The legal basis for a divorce. The law sets out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which a divorce may be granted. Before the court will grant a divorce, the person seeking the divorce must prove that those conditions exist.

이혼 근거: 이혼의 법적 근거입니다. 법률은 이혼을 승인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명시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승인하기 전에, 이혼을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Hearing: A trial or legal proceeding during which an issue is presented to a judge or magistrate.

심리: 쟁점을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재판 또는 법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Judge: A court official with the authority to hear and make decisions about a case.

판사: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법원 사무관입니다.

Judgment: A court’s decision (the final order of the court). For example, the court will enter a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A judgment also refers to the grant of money such as for fees and costs, contempt fees, or attorney fees to be paid by the other party.

판결: 법원의 결정(법원의 최종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완전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비용, 법정 모독 벌금 또는 변호사 수수료 등과 같은 금전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Jurisdiction: Refers to the authority of the court to hear and decide a case.

관할권: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Marital Property: All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even it is not titled in both names, with some exceptions. See Annotated Code of Maryland, Family Law Article, Section 8-201(e) for definition and Sections 8-203 through 8-205 for how the court treats marital property. Marital property can be divided when spouses divorce. If spouses cannot agree, the court will decide. You should consider consulting or hiring a lawyer.

부부 재산: 양쪽 이름으로 소유되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부 재산의 정의에 대하여 메릴랜드 주의 주석 법령 조항, 섹션 8-201(e) 및 법원이 부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섹션 8-203 내지 8-205 를 참조하십시오. 부부 재산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분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고려해야 합니다.

Family Use Personal Property: Personal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and used for family purposes (e.g., family car, family home, furniture, appliances, etc.).

가족 사용 개인 재산: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하였으며 가정 생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개인 재산(예: 가족 자동차, 가족 주택, 가구, 가전제품 등)입니다.

Use and Possess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court may grant use and possession to the parent who has primary custody of the minor child(ren) of the marriage, allowing that parent and the child(ren) to live in the family home and/or use family property for up to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the divorce.

사용과 소유: 특정한 상황에서 법원은 결혼 중 미성년 자녀(들)의 기본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사용 및 소유를 허가하여 해당 부모와 자녀(들)가 이혼 후 최대 삼 (3) 년 동안 가족 주택에 거주하고 가족 재산을 이용하도록 허용합니다.

Family Magistrate: A court official who hears cases. A magistrate's decision is reviewed by a judge before it is final.

가족 치안판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사무관입니다. 치안판사의 결정은 판사가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Mediation: A process in which the parties meet with a trained, neutral third-party (a mediator) who helps them resolve issues and reach an agreement. With some exceptions, most courts refer parties in family law cases involving children, to mediation.

조정: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받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자)와 만나는 절차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원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장합니다.

Modification: A change to an existing order. A party asking the court for a modification must show that there has been a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 since the date of the existing order.

변경: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변경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기존 명령을 내린 후 "결혼 생활의 변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Motion: A request during a case for the court to take certain action in a case.

신청: 사건 처리 과정 중 법원에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Non-Marital property: Property acquired before marriage by one spouse, third-person gifts to one spouse, and inheritances made to one spouse. Non-marital property will not be divided by the court unless the spouses agree, or the property has been commingled with marital property.

비 부부 재산: 한 배우자에 의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한 배우자에 대한 제3자의 선물, 한 배우자에게 전해진 유산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거나 해당 재산이 부부 재산에 혼합되지 않는 한, 비 부부 재산은 법원에 의해 분할되지 않습니다.

Oath: A promise to tell the truth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for lying. Oaths can be oral (for example, made in court while testifying or during a deposition) or written (for example, by signing a form or an affidavit).

선언: 거짓일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전제 하에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선서은 구두(예: 증언 또는 선서하 증언 과정에서 법원에서 말함) 또는 서면 (예: 양식 또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함)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Order: A written directive to the parties based on a ruling/decision of the court about the issues stated in a complaint, petition, motion, or other matter; a command that one or both parties must follow.

명령: 고소, 청원, 신청 또는 기타 사항에서 명시된 문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서면 지시이며, 한 당사자 또는 양측에 내려진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Order of Default: A court's order allowing a party's case to proceed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other party, who failed to file a timely Answer after proper service of process was made.

채무불이행 명령: 영장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후 적시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고 한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Parties: The two (2) sides in a case;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re may be more than one (1) plaintiff and defendant named in a case.

당사자: 원고 및 피고와 같은 두(2)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1) 명 이상의 원고 및 피고가 호명될 수 있습니다.

Pendente Lite: Temporary arrangements for child custody, child support, child visitation, alimony, use and possession of the family home/property, etc. until a final hearing or trial in a case.

소송 중: 사건의 최종 심리 또는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자녀 양육권, 자녀 지원, 자녀 방문, 위자료, 가족 주택/재산의 사용과 소유 등에 대한 일시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Petition: One (1) type of legal paper that starts a case. The person who files the case is the petitioner. The person who is served is the respondent. For example, a Petition for Protection from Domestic Violence or a Petition for Contempt.

청원: 사건을 개시하는 한(1) 가지 유형의 법적 서류입니다. 사건을 제기하는 사람은 신청인입니다. 송달을 받는 사람은 피신청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청원 또는 법정 모독 청원이 있습니다.

Plaintiff: The person who files the initial case. If a counter-complaint/claim is filed by the opposing party, the plaintiff also becomes the "counter-defendant."

원고: 초기 사건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반대 피고"가 됩니다.

Pro se/Self-Represented Litigant/Proper Person: A person who represents themselves in court without a lawyer.

자기 변호/자가 변호 소송인/적임자: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Reconciliation: Married but separated people getting back together.

화해: 결혼했으나 별거 중인 사람들이 다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Service of Process (or "Service"): Providing a copy of the papers being filed to the other side.

영장 송달(또는 "송달"): 상대방에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Spouse: The person to whom you are married.

배우자: 한 당사자가 결혼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Subpoena: A form issued by the court requiring someone to appear in court and/or to provide documents.

소환장: 법원에 출두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이 발행하는 양식입니다.

Uncontested Divorce Case: When neither spouse disagrees with the divorce *and* there are no issues for the court to decide about children, money or property.

분쟁이 없는 이혼 사건: 어떤 당사자도 이혼에 반대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녀, 금전 또는 재산에 대한 법원 결정에 쟁점이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Venue: The county or city where the case is heard.

장소: 사건을 심리하는 카운티 또는 도시를 말합니다.

Writ of Summons: A form issued by the court directing a party to respond to a complaint, motion or petition.

소환 영장: 한 당사자에게 고소, 신청 또는 청원에 대해 대답할 것을 지시하는 법원 발행 양식입니다.